

##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방문요양)



공정거래위원회  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| 계약당사자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이용자<br>(갑)              | 성 명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급/<br>인정번호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번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수급권자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제공자<br>(을)              | 기관명    | 다래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기호         | 32726000183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장 성명 | 김종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인)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| 053.246.787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대리인<br>또는<br>보호자<br>(병) | 성 명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 계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제1조(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급여범위)

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'갑'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- ② '갑'과 '을'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 다만,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
| 구분              | 이용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시간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이용<br>시간<br>(1) | <div>□월 □화 □수 □목</div> <div>□금 □토 □일</div> | 시   분   ~   시   분 |
| 이용<br>시간<br>(2) | <div>□월 □화 □수 □목</div> <div>□금 □토 □일</div> | 시   분   ~   시   분 |

- ※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
- ※ '갑' 또는 '병'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-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%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’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 은 5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  
단,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인 경우 50%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④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 은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'을'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'갑' (또는 '병' )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(보호자)확인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.

제5조(계약자 의무)

- ① '갑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월 이용료 납부
  - 2.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 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
4. 기타 '을' 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'을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1.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 2. 급여제공 중 '갑'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 에게 통보
  3. 급여제공시간에 '갑'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 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 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 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 7. 기타 '갑' (또는 '병' )의 요청에 협조
- ③ '병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1. '갑'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 2. '갑'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 에게 통보
  4. '갑'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 에게 통보
  5. 기타 '을' 의 협조요청 이행

## 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'갑' (또는 '병' 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 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3.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'갑' (또는 '병' )의 동의 없이 '을'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 4. 기타 '갑'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'을'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 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 2. '갑'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 3. '갑'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 4. '갑'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 6. '갑'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## 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'갑' (또는 '병' 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'을'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 과 '병'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## 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'을'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'갑' (또는 '병' )에게 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24호서식]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③ '갑' 은 매월 15일까지 대구은행(505 - 101 - 998 - 335)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'을' 은 '갑'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(본인부담금)영수증을 발급한다.

## 제9조(재계약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'갑' 과 '을' 이 필요한 경우

## 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'을' 은 '갑'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을'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'갑'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 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'을'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'갑'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'갑' (또는 '병' 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'을' 은 즉시 '병' 에게 통보한다.

## 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'갑'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'을' 은 '갑'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'을'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'을'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'을' 은 '갑'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## 제13조(기록 및 공개)

'을' 은 '갑'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 (또는 '병' 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14조('병' - 신원인수인의 권리)

-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(별지 제24호 서식)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
- ③ [소득세법]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
-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
-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
-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
-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
## 제15조(계약당사자 간의 의무) - '갑(수급자)', '을(기관)', '병(신원인수인)'

- ① '갑' 또는 '병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1. '갑'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
  2.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 - [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(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) 준수
  3.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
  4. '을'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'을'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
  5.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'갑'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'을'에게 즉시 통보
  6. '갑'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'갑' 또는 '병' 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,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(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.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)할 경우 '갑' 또는 '병' 은 '을'에게 즉시 통보하고,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'을'이 지지 않음.
  7. '갑' 또는 '병' 은 '갑'에 관한 건강/질병(주의사항 포함)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'을'에게 제공(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)
  8. '병' 은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(대리인 또는 보호자)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- ②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1.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
  2. 급여제공 중 '갑'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에게 통보
  3. 급여제공시간에 '갑'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 5. '갑'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
  6. 이용 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 7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 8. 기타 '갑' 또는 '병' 의 요청한 규칙 이행
- ③ '병(신원인수인)'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 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  4.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  5.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

## 제16조(배상책임)

- ① '을'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'갑' (또는'병' 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 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 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 )은 '을'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 2. '을'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4. '갑'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## 제17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 (또는 '병' 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**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 과 '병' 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'을' 기관장

김종분 (인)

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'갑' 이용자

(인)

'병' 대리인

(인)

[별표 1]

##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01.01)

### 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구 분     | 금액(원)  | 구 분     | 금액(원)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30분 이상  | 16,630 | 150분 이상 | 48,250 |
| 60분 이상  | 24,120 | 180분 이상 | 54,320 |
| 90분 이상  | 32,510 | 210분 이상 | 60,530 |
| 120분 이상 | 41,380 | 240분 이상 | 66,770 |

### 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등급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### 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<br>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6%, 9% |

##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명: (생년월일 : )

주소:

### 1. 수집 및 이용목적

- ☐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☐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☐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☐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- ☐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☐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☐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☐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### 2.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

- ☐ 이용기간 : 급여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
(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)
- ☐ 보유기간 : 계약기간만료일부터 5년  
(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)

### 3. 수집항목

- ☐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
- ☐ 개인정보(주소, 연락처, 가족사항)
- ☐ 사진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이용자 : (인)

보호자 : (인)